

카드뉴스 [제23-14호]

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산학협력단에서 「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」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란?

국가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연구시설·장비비 내 **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**를 **별도 계상**하여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함으로써 **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·장비**
① 유지·보수, ② 임차비, ③ 이전·설치 필요 시 **적립액을 사용**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 (*19.12.시행)

통합관리 절차 및 주요 내용

절 차	주요 내용						
과제계획서 작성/협약	① (신규) 과제계획서 작성, (연차) 과제계획서 변경 작성 - 연구시설·장비비(특례) 계상 - 수정직접비(현물, 위탁연구비 제외)의 10% 이내 계상 - 연구시설·장비비(특례)는 필수 계상이 아님						
↓							
통합계정 설정/관리	① 통합계정 설정/관리 - 통합관리계정 설정 단위 및 관리 : 연구책임자, 공동활용시설, 연구개발기관						
↓							
지급 및 적립	①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(연구장비·재정사업팀)에 통합관리계정 적립 신청 -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입금일 기준 90일 이내 이체 ② 기관 내 계정별 통합연구시설·장비비 적립 - 계정 별 적립잔액 한도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37 2032 1653 2169"> <thead> <tr> <th>연구책임자</th> <th>공동활용시설</th> <th>연구개발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억원</td> <td>7억원</td> <td>1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구책임자	공동활용시설	연구개발기관	3억원	7억원	10억원
연구책임자	공동활용시설	연구개발기관					
3억원	7억원	10억원					
↓							
사용	①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(연구장비·재정사업팀)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사용 신청 ②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 - 임차비, 유지·보수비, 연구장비 이전·설치비						
↓							
사후관리	① 통합 연구시설·장비의 관리 및 점검 - 사용실적보고 시 통합관리계정 이체 결과 제출 -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- 통합관리계정 내 사용(집행)문제 발생 시 개선 요구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에 따른 잔액 반납						

연구시설·장비비(특례) 비목 설정 시 주의사항

주의사항

1. 사업계획서에
 - ① 연구시설·장비비(일반), ② 연구시설·장비비(특례) 계상 여부 확인
2. 연구시설·장비비(일반), (특례) 비목 설정 방법
 - 사업계획서 = Ezbaro 및 RCMS 시스템 = rERP시스템(산학협력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)

연구시설·장비비(특례) 설정

구분	사업계획서	- Ezbaro시스템 - RCMS시스템	rERP시스템
① 연구시설·장비(일반)	연구시설·장비비(일반) =	(일반)연구시설·장비비	= 연구시설/장비비(R&D)
② 연구시설·장비(특례)	연구시설·장비비(특례) =	Ezbaro (특례)연구시설·장비비 RCMS 통합연구시설장비비	= POOL연구시설/장비비(R&D)

※ 혁신법 사업계획서 서식(참고)

(2) 연차별 사업계획

(단위: 천 원)

연차	연구개발비												연구개발비외 지원금	연구수당 계상 기준액	
	직접비											간접비			합계
	인건비		연구시설·장비비		연구 재료 비	위탁 연구 개발 비	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	연구 개발 부담 비	연구 활동 비	연구 수당	소계				
	일반	특례	일반	특례											
1	현금														
	현물														
	소계														

문의처 : 산학협력단 연구장비·재정사업팀 조은아

☎ 033-250-6926 ✉ eunahh@kangwon.ac.kr

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